

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2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2

다. 상정일자 : 2003. 12. 12

(제119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조 규 문

나. 제안사유

-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 등 대통령령의 폐지로 화순군여비조례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하여 개정하므로써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전면개정

- 공무원의 국내여행시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함. (안 제3조)
-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조항 삭제 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여비에 관한 준용기준을 종래에 대통령령 국내여비 규정, 국외여비규정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임.
조례개정상의 절차상, 형식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- 그러나 조례안 제3조 제1항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아울러,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 제4항중 단서조항 '다면,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.'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"생 락"

6. 심사결과

"수정의결"

7. 첨 부 : 화순군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여비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 제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여비의 지급 구분) ①군수는 부군수 직급의 직 상위직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.

제4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제29조 제1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동조 제2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, 제4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여비의 지급 구분)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 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.</p> <p>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-생 략-</p> <p>1~5 - 생략 -</p> <p>6. 제29조 제1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동조 제2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7. - 생 략 -</p>	<p>제3조(여비의 지급 구분) ① 군수는 부군수 직급의 직 상위직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.</p> <p>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~5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6. 제29조 제1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동조 제2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, 제4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7. (개정안과 같음)</p>

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여비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 제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여비의 지급 구분) ①군수는 부군수 직급의 직 상위직급으로 보아 공부원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.

제4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제29조 제1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동조 제2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, 제4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3조(여비의 지급 구분)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 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.	제3조(여비의 지급 구분)① 군수는 부군수 직급의 직 상위직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.
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-생 략-	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(개정안과 같음)
1~5 - 생략 - 6. 제29조 제1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동조 제2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	1~5 (개정안과 같음) 6. 제29조 제1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동조 제2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, 제4항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7. - 생 략 -	7. (개정안과 같음)